

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 - 29호

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14일
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- 금융회사 자체 징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의 제재제도 합리화를 위한 규정개정 추진

2. 주요 내용

①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

- 現 '조치의뢰'의 명칭을 '자율처리필요사항'으로 바꾸고 조치 결과는 보고받되 정리부진시 책임자 문책은 하지 않도록 함

②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

- 사전통지시 위규 행위사실, 근거법규, 제재 예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제재심 안전 중 본인 관련 내용에 대한 열람권 보장

③ 금융기관 합병시 기관제재 누적가중제도 개선

-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상 기관 중 제재사실이 더 많았던 곳을 기준으로 누적가중하도록 함

3. 세부 개정 내용

-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'고시·공고·훈령'을 참조*

*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→지식마당→법령정보→고시·공고·훈령